

2026년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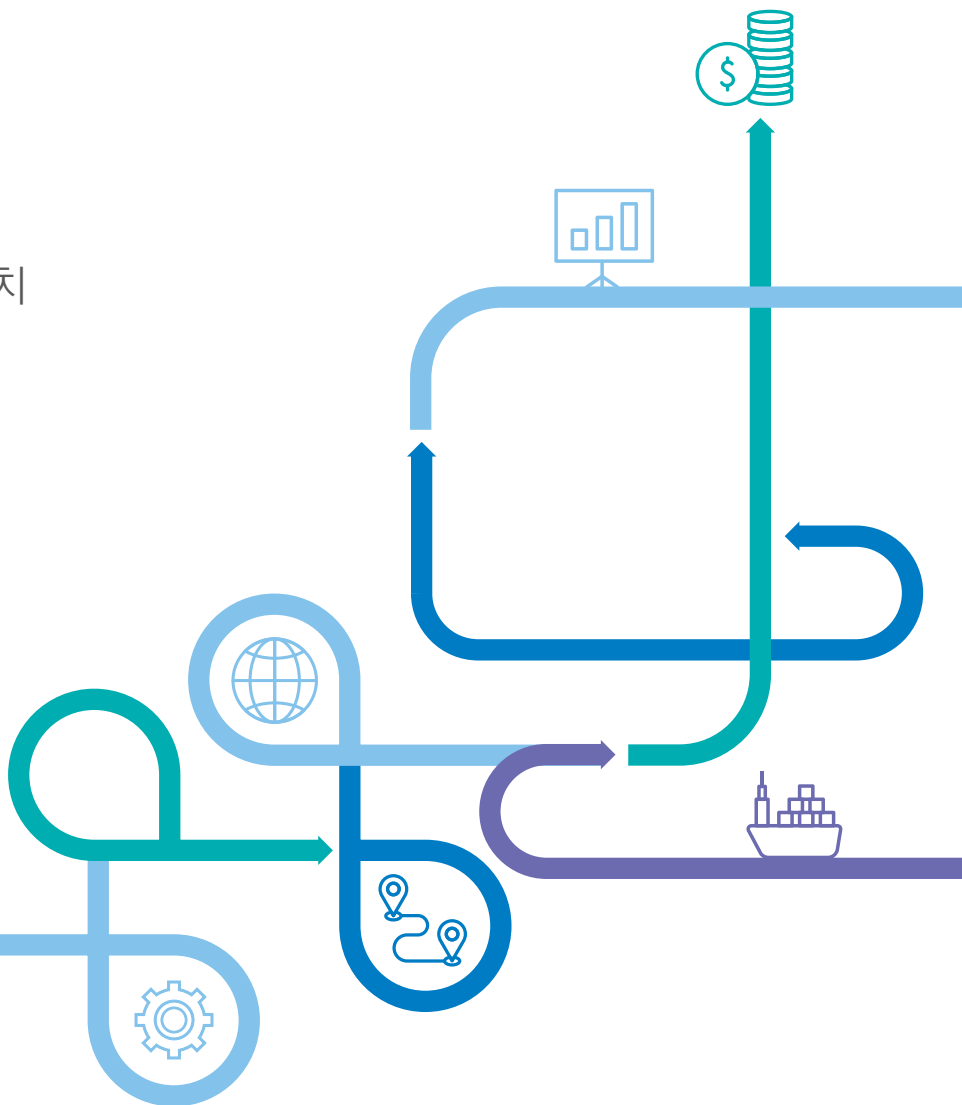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미국 품목분류 판정 사례]

자율주행 모형 차량
대체의사소통 기기
스트링 아트 키트
사다리 잭 브래킷 및 안정장치
냉각수 매니폴드 조립체
전기 인클로저 조립체
공주 캐릭터 세트
장식용 베개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연마 디스크
수소화처리 촉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1. 리포트 개요

2. 품목분류 판정 사례

- 2-1. 자율주행 모형 차량
- 2-2. 대체의사소통 기기
- 2-3. 스트링 아트 키트
- 2-4. 사다리 잭 브래킷 및 안정장치
- 2-5. 냉각수 매니폴드 조립체
- 2-6. 전기 인클로저 조립체
- 2-7. 공주 캐릭터 세트
- 2-8. 장식용 베개

3. 원산지 판정 사례

- 3-1. 연마 디스크
- 3-2. 수소화처리 촉매





01. 리포트 개요

(1) 분석 대상

- 2026년 6월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전심사 사례 중,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야 판정문 10건을 리포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번호	분야	품명	판정번호
1	품목분류	자율주행 모형 차량(Programmable autonomous racecar)	N361915
2		의사소통 기기(Augmentative·Alternative·Communication device)	N361616
3		스트링 아트 키트(String art kit)	N352616
4		사다리 잭 브래킷 및 안정장치(Ladder jack bracket and stabilizers)	N361563
5		냉각수 매니폴드 조립체(Coolant manifold assembly)	N361850
6		전기 인클로저 조립체(Electrical enclosure assembly)	N362038
7		공주 캐릭터 세트(Disney princess set)	N361341
8		장식용 베개(Decorative pillow)	N361981
9	원산지	연마 디스크(Abrasive discs)	H360070
10		수소화처리 촉매(Hydroprocessing catalyst)	N36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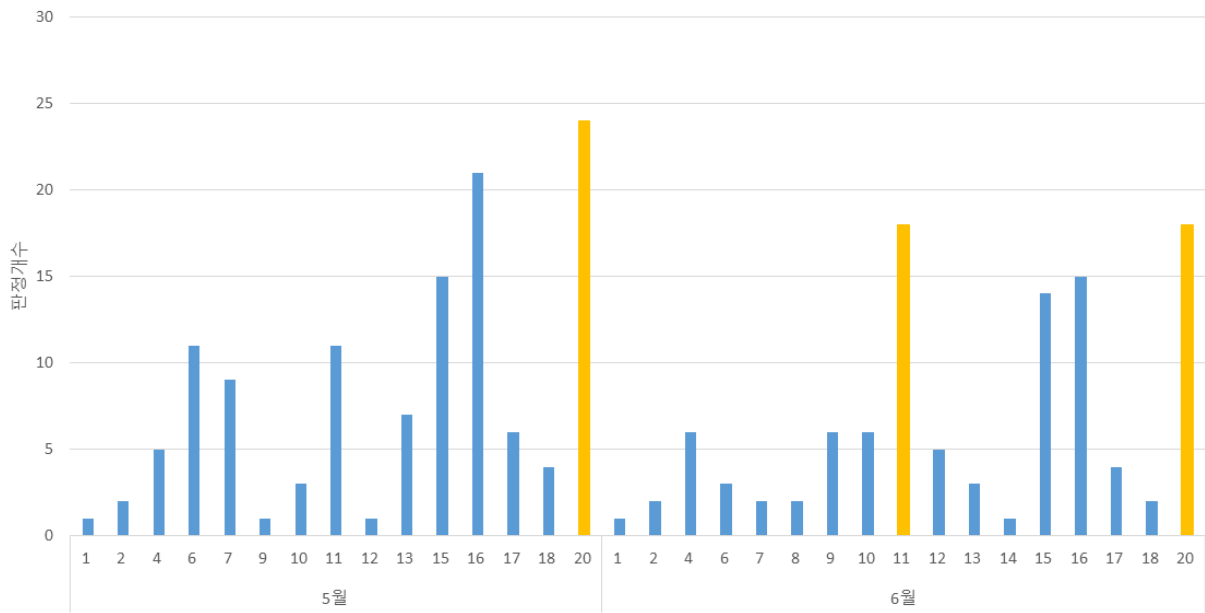
(2) 분야별 판정 현황

- CBP의 분야별 판정 건수(7월 13일 조회일 기준)는 5월 대비 6월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 모두 감소했으며, 전체 판정 건수는 품목분류 분야가 원산지 분야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월 품목분류 판정 124건 | 원산지 판정 54건
 - 6월 품목분류 판정 110건 | 원산지 판정 36건

(3) 품목별(HS 부 기준) 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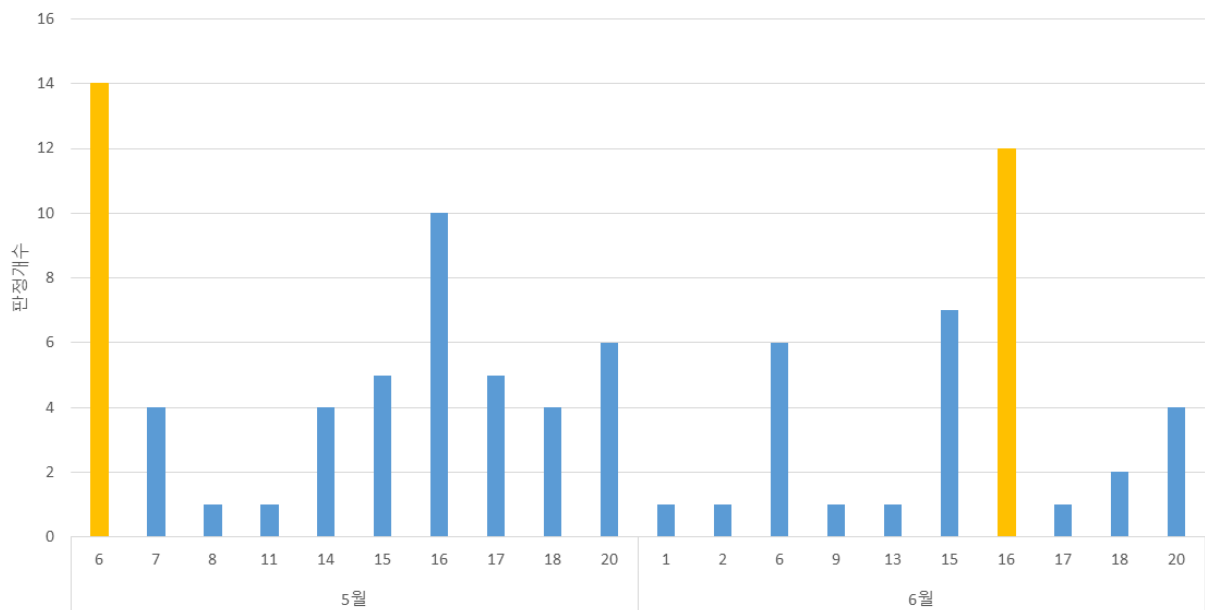
- 품목분류 분야: 6월 CBP 품목분류 판정 사례 분석 결과, 방직용 섬유 제품(제11부), 잡품(제20부), 그리고 기계류(제16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5월 제20부(잡품),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 6월 제11부(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제20부(잡품),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그림 1〉 2026년 5~6월 품목별 품목분류 판정 건수



- 원산지 분야 : 6월 CBP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비금속 제품(제15부) 그리고 화학공업생산물(제6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5월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20부(잡품)
- 6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그림 2〉 2026년 5~6월 품목별 원산지 판정 건수





02. 품목분류 판정 사례

2-1 품목분류 CASE 1 (제85류 전기기기)

(1) 품목정보

품 명	자율주행 모형 차량(Programmable autonomous racecar)
판정번호	NY N361915
판정일자	2026-06-22
신청국가	미국
HTSUS	8543.70.9860
제품설명	• 대상물품: 레이싱카를 1:12 비율로 축소한 형태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모형 차량 • 용도: 대학, 연구기관, AI 연구자 및 숙련된 취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AI 프로그래밍 교육 및 연구에 활용 • 구성: 라이다(LiDAR), 카메라 모듈 및 컴퓨터 보드가 통합되어 있으며, 보드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냉각 팬 및 다양한 연결 포트를 포함 • 활용: 사용자가 차량 보드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차량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설계

(2) 쟁점사항

- AI 프로그래밍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모형 차량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023호: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
 - 제8543호: 그 밖의 전기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

(3) 관련 규정

1) 제9023호 해설

-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시연용 기구 : 예를 들면, Wimshurst(윌스허스트)의 기계(전기실험용)·Atwood(앨우드)의 기계(중력의 법칙 설명용)·Magdeburg(매그데버그)의 반구(hemisphere)(대기압의 효과설명용)·Gravesande(그라브산드)의 링(ring)(열팽창의 설명용)·Newton(뉴턴)의 원판(백색광의 혼성색의 설명용)과 같은 것이다.
- (9) 항공기·선박·기계 등의 축소모형(일반적으로 금속나 목재로 만든 것, 예: 광고·선전용의 것 등) : 다만, 오직 장식용으로만 적합한 모형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제8543호 해설

-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구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023호(전시용 기구와 모형)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실제 경주용 차량을 1:12 비율로 축소한 모형 차량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는 없으나 모터와 구동계를 갖추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자·취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AI 프로그래밍 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특정 트랙에서 실행하여 프로그램의 성능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AI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축소 모형에 해당하므로 제9023호 분류를 주장하였다. 제9023호에는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 또는 교육용으로만 적합한 기구와 모형이 분류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정된다. 동 호 해설서는 시연용 기구·연습용 동체·항공기·선박·기계 등의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 CBP는 쟁점물품이 실제 차량을 축소한 모형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전시 또는 교육용으로만 사용되는

모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9023호의 전시용 기구와 모형은 원리나 구조를 시연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된다.

- 반면, 쟁점물품은 사용자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작성·수정하고 실제 주행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기능의 자율주행 차량 모형이다. 즉, 단순히 차량의 작동 원리를 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래밍 결과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여 오류를 점검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CBP는 쟁점물품이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이 제9023호의 전시용 기구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른 호에서의 분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쟁점물품은 AI 컴퓨터 보드를 통해 제어되는 자율주행 모형 차량으로, AI 프로그래밍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
- CBP는 쟁점물품이 제84류의 기계류 및 제90류의 기기 등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제85류에서도 이를 직접 규정하는 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BP는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86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AI 프로그램에 의해 자율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레이싱카의 외형을 축소한 모형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작성·수정하고 실제 주행을 통해 프로그래밍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기능의 자율주행 차량이다.
- CBP는 쟁점물품이 단순히 원리나 구조를 시연하기 위한 전시용 모형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험·검증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9023호의 전시용 기구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9023호 해당 여부는 물품이 전시 목적의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기와 마찬가지로 전시 이외의 실용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전시만을 목적으로 원래의 기기보다 기능이 제한되거나 외형만 갖춘 모형도 존재하는 반면, 완전한 기능을 갖춘 기기가 전시나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9023호 분류 여부는 물품의 실질적인 기능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대체의사소통 기기(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devices)
판정번호	NY N361616
판정일자	2026-06-10
신청국가	미국
HTSUS	8543.70.98.60
제품설명	• 대상물품: 루게릭병, 뇌성마비 등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양방향 의사소통 기기 • 용도: 장애인과 타인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문, 조명, 전화기 등 상호 연결된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도구로 활용 • 구조: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스피커·시선 추적장치 등 다양한 전자장치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 • 제품유형 ① TD I-13, TD I-16: 휠체어 또는 병원용 침대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모델로, 손과 언어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시선 추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탑재 ② TD I-110: 내구성이 강화된 휴대형 모델로, 음성 생성 기능을 제공하며 시선 추적 기능은 미탑재 • 소프트웨어: 수입 시점에는 Windows 운영체제의 임시 테스트 버전만 설치되어 있으며, 기기의 환경은 폐쇄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음성 생성, 기기 제어 및 기타 보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시스템에 로드 가능)
참고 사진	 *사진 출처: Tobii Dynavox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양방향 의사소통 기기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
 - 제8543호: 그 밖의 전기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3) 관련 규정

1) 제84류 주6

-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제8471호 해설

- (A) 자동자료처리기계
 -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한다.
 -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과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루게릭병·뇌성마비 등으로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기기이다. 병원용 침대 또는 휠체어에 장착하는 고정형 모델과 휴대형 모델로 구분되며, 수입 시점에는 Windows 운영체제의 임시 테스트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음성 생성 및 기기 제어 등 특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용 소프트웨어만 설치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8471호 해설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다.
- 제84류 주 제6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으로 ① 프로그램과 자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②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 ③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 ④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처리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CBP는 쟁점물품이 주 규정에서 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물품은 폐쇄적인 시스템 환경으로 운영되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으며,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기기에 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음성 생성·기기 제어 등 전용 소프트웨어로 제한되어 있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 분류 여부 판단

-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CBP는 쟁점물품인 대체의사소통 기기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품목분류 표의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86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대체의사소통 기기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디스플레이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하지 않았다. 제84류 주 제6호에 따르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 쟁점물품은 전용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설치·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물품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일반적인 범용 컴퓨터와 유사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용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시스템 환경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기의 품목분류 시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제84류 주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스트링 아트 키트(String art kit)
판정번호	NY N352616
판정일자	2026-06-11
신청국가	미국
HTSUS	5404.19.8020
제품설명	• 대상물품: 스트링 아트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의 소매용 포장으로 구성한 수공예 키트 *스트링 아트: 나무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은 후 실을 감아 다양한 무늬와 디자인을 구현하는 공예 기법 • 구성요소 ① 목재 베이스: 원형으로 금속 못(240개)이 박혀있는 작품 제작용 베이스 ② 스풀: 약 150g의 나일론 모노필라멘트가 감긴 실타래 ③ 브래킷: 베이스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나무 재질의 스풀 브래킷 ④ 스탠드: 나무 재질의 스마트폰 거치대 ⑤ 포장 용기: 작업 시 이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판지 용기 ⑥ 설명서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 이용권(디지털 가이드 제공)
참고 사진	 *사진 출처: Let's String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스트링 아트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의 소매용 포장으로 구성한 수공예 키트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4421호: 그 밖의 목제품
 - 제5404호: 합성모노필라멘트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2) 제11부 주4

-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
-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 (2)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3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견 웨이스트사는 85그램
- (나) 2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 (다) 그 밖의 실은 500그램
- (3) 간사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은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4) 분석 및 판정

1) 모노필라멘트 및 목제품의 품목분류 판단

- 쟁점물품은 목재판에 원형으로 박힌 못들 사이에 색실을 엮어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와 디자인을 구현하는 스트링 아트(string art) 키트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공예용 제품이다. 키트는 작품의 베이스가 되는 목재판과 합성섬유 재질의 실타래·실타래 고정용 브래킷·포장 상자·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 CBP의 성분 분석에 따르면, 실타래의 총중량은 지지대 포함 148g이며, 실은 꼬임·텍스처 가공 및 탄성이 없는 나일론 모노필라멘트이다. 또한 단면 치수는 0.154mm, 선밀도는 228데시텍스, 인장강도는 텍스당 77.53센티뉴턴으로 분석되었다.
-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사가 분류되며, 호 단위에서 합성 모노필라멘트는 제5404호에, 소매용 인조 필라멘트사는 제5406호에 각각 분류된다. 제54류 주 제4호에 따르면 스폴 등에 감긴 인조필라멘트사가 제5406호의 소매용 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량이 85g 이하이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실타래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제540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CBP는 이를 제5404호로 분류하였다.
- CBP는 그 외 구성요소에 대하여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베이스판·브래킷·스탠드는 모두 목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는 제4421호에 해당한다.
- CBP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합성섬유(나일론) 모노필라멘트 실(제5404호)과 목제품(제4421호)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통칙 제2호 이하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최종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2)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 쟁점물품과 같이 둘 이상의 호(제4421호 및 제5404호)에 분류될 수 있는 복합물품은 통칙 제2호 나목에 따라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 통칙 제3호 가목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합물품의 경우 둘 이상의 호가 각각 일부 구성요소만을 특정하고 있다면, 어느 한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해당 호들은 동일하게 구체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다.
- 통칙 제3호 나목은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BP는 구성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통칙 제3호 다목은 가목 및 나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동등하게 고려되는 호 가운데 숫자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BP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제4421호와 제5404호 중 숫자 순서상 마지막에 위치하는 제5404호(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스트링 아트를 위한 수공예 키트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CBP는 쟁점물품을 목제품과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판단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를 검토한 후 통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최종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
-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기준(통칙 제3호 나목)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어느 구성요소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스트링 아트 작품의 기반이 되는 목재판과 디자인을 구현하는 합성섬유 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구성요소 가운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칙 제3호 다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사다리 잭 브래킷 및 안정장치(Ladder jack bracket and stabilizers)
판정번호	NY N361563
판정일자	2026-06-11
신청국가	미국
HTSUS	8302.50.0000; 7616.99.5190
제품설명	• 대상물품: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고정하기 위한 브래킷 및 안정장치 • 주재질: 알루미늄 • 제품유형: ① 사다리 잭 브래킷(AC10-14-02): 고정장치를 갖춘 삼각형 형태의 브래킷으로, 연장 사다리에 수직으로 장착되어 작업 발판 역할과 사다리 고정 기능을 수행 ② 사다리 안정장치(AC96): 연장 사다리 상단에 장착되는 C자형 장치로,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켜 사다리와 지지 구조물 간 안정적인 접촉면을 형성하고 사다리를 고정 ③ 사다리 안정장치(AC78): 신속한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한 스프링 방식의 잠금장치가 적용된 안정장치

(2) 쟁점사항

- 사다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래킷 및 안정장치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302.49호: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8302.50호: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3) 관련 규정

1) 제8302호 해설

-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G) 모자걸이·모자 거는 못·브래킷(bracket)(고정식·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타월걸이·행주걸이·술걸이·열쇠걸이)

2) 제7616호 해설

•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302.49호(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으로, 사다리 잭 브래킷과 사다리 안정장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주재질은 알루미늄이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사다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8302.4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8302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부착구 등이 분류된다.
- CBP는 유사 판정 사례(HQ 960428)인 환기 통로의 천장부에 설치되는 그릴의 품목분류를 참고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CBP는 부착구(fitting)를 건물의 고정물(fixture) 또는 설치물로 보았으며, fixture를 "제자리에 고정되거나 체결된 물품" 및 "주택 또는 토지에 부착되어 법적으로 그 일부로 간주되는 물품"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그릴은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영구적으로 고정·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8302호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다리 잭 브래킷과 사다리 안정장치는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탈부착하는 물품으로, 영구적으로 고정·설치되는 부착구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제8302호는 부착구의 적용 대상을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다리는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BP는 쟁점물품을 제8302.49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다리 잭 브래킷의 품목분류

- CBP는 쟁점물품이 제8302.49호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다리 잭 브래킷의 품목분류를 제8302호의 다른 소호에서 검토하였다. 제8302.50호에는 비금속제 브래킷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브래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코트걸이·타월걸이·행주걸이·술걸이·열쇠걸이 등을 예시하고 있다.
- 품목분류표와 해설서에는 브래킷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CBP는 웹스터 사전을 참조하여 브래킷을 "구조물로부터 돌출되어 수직 하중을 지지하거나 모서리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설계된 돌출 부재(overhanging member)"로 해석하였다.
- 사다리 잭 브래킷은 사다리로부터 돌출되어 작업 발판이나 플랫폼을 장착·지지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브래킷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 이에 CBP는 사다리 잭 브래킷을 제8302.50.000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3) 사다리 안정장치 품목분류

- 사다리 안정장치는 사다리와 지지 구조물 사이에 안정적인 접촉면을 형성하여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사다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물품이다. 구조물로부터 돌출되어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앞서 검토한 브래킷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제7616호는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알루미늄 제품을 포괄하는 잔여 호로서, 제15부 주 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82류 및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 CBP는 사다리 안정장치가 제82류 또는 제83류를 포함한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되는 제7616.99.519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사다리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브래킷 및 안정장치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사다리에 부착하여 발판 또는 플랫폼의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사다리 잭 브래킷과, 사다리와 지지 구조물 간의 접촉면을 넓혀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다리 안정장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CBP는 두 유형 모두 제8302.49호의 장착구·부착구에는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물품은 필요에 따라 사다리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건물이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부착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다리 잭 브래킷은 브래킷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돌출되어 작업 발판이나 플랫폼을 지지하는 특성이 인정되어 제8302.50호의 브래킷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사다리 안정장치는 브래킷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구체적으로 분류할 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타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되는 제7616호로 최종 분류되었다.

- 본 사례에서 살펴본 제8302호에는 mountings·fittings·brackets·fixtures·racks 등 물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이들 용어는 서로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와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품목분류 시에는 호의 용어, 해설서 및 관련 판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냉각수 매니폴드 조립체(Coolant manifold assembly)
판정번호	NY N361850
판정일자	2026-06-23
신청국가	한국
HTSUS	8481.90.9085
제품설명	• 대상물품: 차량 구동계의 열관리를 위한 냉각수 분배 장치 • 구조: 직사각형 쉘 부품과 냉각수 순환 및 저장을 위한 유로로 구성된 조립체로, 냉각수 펌프·밸브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결합부를 포함 • 기능: 차량 내부에서 냉각수 순환을 도와 배터리·전자장치·구동 모터 등 구동계 구성요소의 온도를 적정 범위로 유지

(2) 쟁점사항

- 차량 구동계의 열관리를 위한 냉각수 매니폴드 조립체를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8708호: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 제8481호: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3) 관련 규정

1) 제8708호 해설

-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2)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3) 제16부 주2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차량 내부의 냉각수 순환을 도와 구동계의 온도를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장치이다. 쉘 구성요소와 냉각수 순환을 위한 유로가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냉각수 펌프와 밸브 등을 장착하기 위한 결합부를 포함하고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성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제8708호 분류를 주장하였다. 제8708호에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된다.

- 다만 제17부 주 규정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 또는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4류 내의 특정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차량의 열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부분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84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2) 제8481호(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차량 열관리 시스템에 관한 판정 사례(N327826)를 검토하였다. 해당 사례의 물품은 전기 구동식의 밸브·워터펌프·포트 및 매니폴드 박스로 구성된 조립체로, 펌프가 냉각수를 순환시키면 밸브가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여 각 포트에 분배함으로써 차량 열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 CBP는 해당 사례의 차량 열관리 시스템을 제8708호가 아닌 제84류의 워터 펌프(제8413호)와 밸브(제8481호)의 복합물품으로 보고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다만 펌프와 밸브 기능 중 어느 하나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숫자 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제8481호로 분류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이 제8481호에 분류된 열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6부 주 제2호에 따르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며, 제8481호는 이러한 전용 부분품을 소호 제8481.9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을 제8481.90.9085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차량 구동계의 열관리를 위한 구성요소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차량에 전용되는 부분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호가 아닌 밸브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호로 분류되었다.
- 이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84류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차량은 다양한 기계장치가 결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차량 전용 부분품의 품목분류에서는 단순히 차량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제8708호를 적용하기보다는, 물품의 기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4류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전기 인클로저 조립체(Electrical enclosure assembly)
판정번호	NY N362038
판정일자	2026-06-23
신청국가	미국
HTSUS	8537.10.9160
제품설명	• 대상물품: 치과용 의료기기의 구성요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조립체 • 구조: 금속판 베이스에 메인제어보드(PCBA)·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PLC)·통신 모듈·디지털 입출력 모듈·모터 구동 모듈·냉각 팬·각종 전기 케이블 등을 장착한 구조 • 시스템: PLC에 의료기기 제어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 • 활용: 사용자는 별도의 컴퓨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장비를 조작

(2) 쟁점사항

- 의료기기의 제어 및 전력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조립체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018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 제8537호: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3) 관련 규정

1) 제90류 주2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2) 제8537호 해설

-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018호(의료기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금속판 베이스에 메인제어보드(PCBA)·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PLC)·각종 모듈 및 전기 부품이 조립된 제품으로, 치과용 밀링 머신에 장착되어 각 구성요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LC에는 전용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별도의 컴퓨터에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치과용 밀링 머신의 전력 공급 및 동작 제어를 위한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기 및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01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만 제90류 주 제2호는 부분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9018호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다른 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치과용 의료기기에 전용되는 조립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반 위에 여러 전기 부품이 조립되어 전기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제8537호(전기 제어 및 배전용 보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2) 제8537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분류 여부 판단

- 제8537호에는 전기 제어 또는 배전을 위하여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해당하는 기기를 두 개 이상 갖춘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된다. 쟁점물품이 동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그 밖의 기반을 갖춘 것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가 두 개 이상 조립되어 있을 것
 - 전기 배전 또는 전기 제어에 사용될 것
- 쟁점물품은 금속판을 기반으로 PLC·통신 모듈·디지털 입출력 모듈·모터 구동 모듈·각종 전기 케이블 등이 조립된 구조로, 동 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기반'에 해당하여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두 개 이상 갖추고 있으며, 치과용 밀링 머신의 각 구성요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므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건도 각각 충족한다.
- 아울러 제8537호 해설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를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계를 제어하는 디지털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탑재된 PLC는 치과용 밀링 머신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서 이에 해당한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반(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제8537.10.916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제어 및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조립체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CBP는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전용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의 전용 부분품임에도 제9018호가 아닌 제8537호로 분류되었다.
- 또한 CBP는 쟁점물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PLC가 제8537호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PLC는 프로그램의 논리 연산을 통해 기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로서 동 호 해설서상 제어기의 특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PLC를 중심으로 장비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조립체의 경우에는 제8537호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공주 캐릭터 세트(Disney princess set)
판정번호	NY N361341
판정일자	2026-06-01
신청국가	미국
HTSUS	9503.00.0073; 9505.90.6000; 9615.11.5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디즈니 공주 캐릭터 테마의 세트 물품 • 구성요소: ① 인형: 높이 12.5인치의 디즈니 공주 캐릭터 형상 완구 인형 ② 아동용 스커트: 허리밴드가 부착된 인조섬유 재질의 치마 ③ 티아라(머리 장식): 모조 보석이 장식된 플라스틱 재질의 왕관으로, 아동의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디자인 특징: 티아라와 스커트는 인형의 의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하나의 테마를 구성

(2) 쟁점사항

- 인형, 아동용 스커트 및 티아라로 구성된 공주 캐릭터 테마 세트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503호: 인형과 그 밖의 완구
 - 제9505호: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 제9615호: 빗·헤어슬라이드·머리핀과 이와 유사한 물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3) 제95류 해설

-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디즈니 공주)를 적용한 인형·아동용 스커트·티아라(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 형태의 머리 장식)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 아동은 스커트와 티아라를 직접 착용하고 인형과 놀이를 즐길 수 있다.
- CBP는 쟁점물품이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려면 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될 것, ②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일 것, ③ 케이스 등에 함께 포장되어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쟁점물품은 인형·아동용 스커트·티아라로 구성되어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하나의 포장에 함께 제공되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형을 가지고 노는 행위와 스커트·티아라를 착용하여 공주 모습을 연출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각 구성품이 하나의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각 구성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2) 구성품별 품목분류 판단

- 세트에 포함된 인형은 높이 약 12.5인치의 공주 캐릭터 형상으로 제작된 아동용 완구이다. 제9503호에는 아동 및 성인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각종 완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에서는 인형을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CBP는 인형을 제9503.00.0073호로 분류하였다.
- 아동용 스커트는 얇은 인조섬유 재질로 제작된 물품으로,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가 아니라 공주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오락용 의상에 해당한다. 이에 CBP는 아동용 스커트를 축제·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제9505.90.6000호로 분류하였다.
- 티아라는 모조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 형태 머리 장식으로, 머리에 착용하는 장식품에 해당한다. 이에 CBP는 티아라를 머리핀과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9615.11.5000호로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인형·스커트·티아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을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 세트로 보아 단일 품목번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CBP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행위와 공주 의상을 착용하는 행위를 서로 독립된 활동으로 보아, 각 구성품이 하나의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모든 구성품이 공주 캐릭터라는 동일한 테마를 공유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특정한 활동을 위한 소매용 세트로 보지 않았다.
- 아울러 아동용 스커트의 품목분류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의류는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의 스커트는 얇은 인조섬유 재질에 느슨하게 봉제된 조잡한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적인 의류가 아니라 특정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한 오락용 물품(제9505호)으로 판단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장식용 베개(Decorative pillow)
판정번호	NY N361981
판정일자	2026-06-11
신청국가	미국
HTSUS	6307.90.9891
제품설명	• 대상물품: 카우보이 부츠 형상의 베개형 물품 • 용도: 침대·소파 등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실내용 장식품 • 규격: 높이 14인치, 길이 10인치, 두께 2인치 • 소재: ① 외피: 100% 폴리에스터 니트 또는 우븐 염색 원단 ② 충전재: 100% 폴리에스터 솜 • 디자인: 파란색·흰색·분홍색의 3가지 색상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프린트 무늬·자수·금속 리벳·리본·프린지 등 장식 요소에 차이가 있음

(2) 쟁점사항

- 카우보이 부츠 형상의 베개형 실내 장식용 물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404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6307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3) 관련 규정

1) 제9404호 해설

-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 (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예를 들면,
 -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덧베개·베개·쿠션·푸프(pouff) 등

2) 제6307호 해설

-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404호(침구류)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카우보이 부츠 형상으로 디자인된 베개 형태의 제품으로, 침대나 소파 등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실내용 장식품이다. 표면은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작되고 내부에는 솜이 충전되어 있으며, 프린트·자수·금속 리벳·리본·프린지 등의 장식 요소가 부착되어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내부에 솜을 충전한 베개에 해당하므로, 침구류가 분류되는 제940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이불·베개·쿠션 등 내부에 다양한 재료를 충전한 침구류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CBP는 쟁점물품이 실제 베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쟁점물품의 외부에는 리벳·프린지·리본 등의 입체적 장식 요소가 부착되어 있어 일반적인 베개와 같이 머리를 받치기에 적합하지 않다.
- 또한 카우보이 부츠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굴곡진 형태로 제작되어 베개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실제 사용할 경우 장식 요소가 마모되어 외관상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베개로서의 실용적 기능보다는 카우보이 부츠를 모티브로 한 장식적 기능이 주된 물품으로 판단하여, 제9404호의 침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제6307호(방직용 섬유제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표면이 100% 폴리에스터 직물 또는 편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이다. 제6307호는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괄하는 잔여호이다.
- CBP는 쟁점물품이 제9404호의 침구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호에도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이 베개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물품은 카우보이 부츠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리본·프린지·금속 리벳 등 다양한 장식 요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베개와 달리 굴곡진 형태로 제작되어 머리를 받치거나 누워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이 CBP가 쟁점물품을 베개가 아닌 실내용 장식품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장식 요소가 부가된 베개가 모두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베개에도 자수나 장식이 부가될 수 있으며, 형태 역시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시에는 형태, 사용 목적,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장식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물품의 경우에는 어느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03. 원산지 판정 사례

3-1

원산지 CASE 1 (제68류 돌·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 품목정보

품 명	연마 디스크(Abrasive discs)
판정번호	HQ H360070
판정일자	2026-06-18
신청국가	핀란드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 중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차량·항공기·철도·선박의 에폭시·아크릴 등 레진 기반 표면을 연마하는 공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마 디스크 • 제품유형: 공구에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접착식과 벨크로 방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형태: 탄화규소 연마 입자가 부착된 PET 필름에 공구 장착을 위한 접착제 (접착면 보호용 이형지 포함) 또는 후크 앤 루프 원단이 뒷면에 부가된 구조

(2) 쟁점사항

- 외국산 원자재(연마 롤 및 이형지)를 수입한 후 핀란드에서 접착면 부착 및 절단 등의 완제품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마 디스크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

(3) 제조 공정

1) 원자재(연마 롤 및 이형지) 수입

- PET 필름 지지체에 인공 탄화규소 연마 입자를 부착한 연마 롤(중국)을 핀란드로 수입
- 접착면 보호용 이형지(이탈리아)를 핀란드로 수입

2) 완제품 제조 공정(핀란드)

- ① 롤 뒷면에 감압성 접착제 도포(벨크로 방식의 경우 후크 앤 루프 원단 부착)

- ② 접착면과 이형지 합지(laminating)
- ③ 레이저 커팅
- ④ 개별 디스크 형성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차량·항공기·철도·선박의 레진 재질 표면을 연마하는 도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마 디스크로, 도구에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접착식과 벨크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 쟁점물품의 제조에는 PET 재질의 지지체에 연마 입자가 부착된 연마 롤(중국산)이 사용된다. 핀란드에서는 연마 롤의 뒷면에 공구 부착을 위한 접착제 또는 후크 앤 루프 원단을 부착하는 공정이 수행된다. 접착식 제품의 경우 접착면 보호를 위해 이형지를 추가로 부착하며, 이후 레이저 커팅을 통해 개별 연마 디스크 형태의 완제품으로 가공된다.
- 신청인은 연마 롤이 완제품인 연마 디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에 불과하며, 핀란드에서 접착제 또는 후크 앤 루프 원단을 부착하고 개별 디스크 형태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정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사용성이 향상되고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품의 제조 공정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물품에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킨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
- 실질적변형 여부는 가공을 거친 물품이 가공 이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CBP는 핀란드에서 수행된 공정이 실질적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유사 판정 사례를 참조하였다.
 - N326241에서는 한국에서 제조된 연마 롤에 중국에서 벨크로 원단을 부착하고 다이컷(Die-cut) 방식으로 절단한 경우를 검토하였다. CBP는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새로운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제품을 창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질적변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 H563306에서는 화장지 점보 롤을 절단·접지·포장하여 소비자용 화장지로 제조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CBP는 해당 공정을 단순 작업으로 보아 실질적변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 CBP는 유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 수행된 공정이 연마 롤과 다른 새로운 명칭·특성 및 용도의 물품을 창출하는 제조 공정이 아니라 단순한 마감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연마 입자가 부착된 롤 형태의 원자재에 접착제·이형지를 부착하고 절단하는 공정만으로는 새로운 명칭·특성·용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 최종제품(연마 디스크)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핀란드에서 수행된 추가 공정이 실질적변형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쟁점물품인 연마 디스크의 비특혜원산지는 연마 롤의 제조가 이루어진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5) 결론

- 본 사례는 표면 연마에 사용되는 연마 디스크의 비특혜원산지 결정을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탄화규소 연마 입자가 부착된 롤 형태의 원자재에 접착제 또는 후크 앤 루프 원단을 부착하고 디스크 형태로 절단하여 완성된다. 그러나 CBP는 이러한 공정이 실질적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 아니라 단순한 마감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공정을 수행한 핀란드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실질적 변형 여부는 공정의 결과로 새로운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물품이 창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사례에서는 롤 형태의 원자재가 디스크 형태의 완제품으로 가공되었으나, 연마 도구로서의 주요 특성과 용도는 원자재 단계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핀란드에서의 추가 공정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과 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1) 품목정보

품 명	수소화처리 촉매(Hydroprocessing catalyst)
판정번호	NY N361707
판정일자	2026-06-16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 중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정유 공정에 사용되는 고체 상태의 수소화처리 촉매 • 성분: NiMoW-001(CAS No. 1351378-24-9), 셀로사이즈(또는 메토셀) 및 에틸렌글리콜 함유 • 기능: 고온·고압 환경의 정유 공정에서 수소화 탈황 및 수소화 탈질소 반응을 촉진하여, 원유에 포함된 황 및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고 청정 연료를 생산

(2) 쟁점사항

- 외국산 및 국내산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수소화처리 촉매의 비특혜원산지 결정방법

(3) 제조 공정

1) 원료 수입 및 조달

- 외국산 원료: 중국산 NiMoW-001 분말, 독일산 셀로사이즈(Cellosize) 또는 비공개 국가산 메토셀(Methocel)
- 국내산 원료: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2) 혼합 제조 공정(한국)

- ① 원료를 혼합하여 습윤 상태의 반죽(wet paste) 제조
- ② 반죽을 비대칭 사각형 단면의 다이가 장착된 압출기에 투입하여 압출
- ③ 압출 과정에서 길고 연속적인 막대 형태의 혼합물 형성
- ④ 혼합물을 진동 벨트 건조기에서 약 149℃로 건조
- ⑤ 건조된 혼합물을 최종 완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 ⑥ 비대칭 사각형 단면의 수소화처리 촉매 완성(직경 1.5~3.0mm, 길이 3~8mm)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청정 연료의 생산을 위해 원유에 포함된 황 및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화처리 촉매로, 중국산 NiMoW-001 분말, 독일산 셀로사이즈 또는 국가 미상의 Methocel, 그리고 한국산 에틸렌글리콜을 원료로 하여 한국에서 혼합, 압출, 건조 및 절단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 원재료 중 NiMoW-001은 촉매의 활성 기능을 담당하는 금속 전구체이며, 셀로사이즈 및 메토셀은 압출 공정에서 물질의 변형 특성과 가소성을 개선하는 보조 재료이다. 또한 에틸렌글리콜은 수분 보유력과 성형 특성을 조절하여 제품의 압축 강도와 입자 밀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신청인은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이 원료를 원유 정제에 적합한 촉매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원료가 가진 촉매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물리적 형태, 기공 구조 및 재료 특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CBP는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원료에 발생한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물리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 10마이크론의 건조 분말에서 직경 1.5~3.0mm, 길이 3~8mm 범위의 비대칭 사각형 압출 입자로 형태 변화
 - 압축 강도 5lb/mm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입자 구조 형성
 - 대형 및 중간 크기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독특한 다공성 구조 형성
- CBP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실질적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 쟁점물품은 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NiMoW-001 분말에 압출 보조제인 셀로사이즈와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고 물과 혼합하여 제조한 습윤 반죽을 원료로 한다. 이후 해당 반죽은 압출·건조·절단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으로 제조된다. 이 중 압출 및 절단 공정은 제품의 형태와 입자 구조를 조정하는 물리적 가공에 해당하며, 건조 공정은 혼합물 내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첨가제인 셀로사이즈와 에틸렌글리콜은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로 변환되지 않고 최종 제품에 그대로 잔류한다.
-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원재료의 형태, 기공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켰으나, 재료 간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NiMoW-001 분말은 가공 이후에도 본래의 촉매 기능과 용도를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첨가제 역시 최종 제품에 그대로 잔류하여 화학적 성분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CBP는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할 뿐,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여 새로운 물질을 창출하는 실질적변형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수소화처리 촉매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CBP는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재료 간의 화학적 반응 없이 물리적 변화만 발생시키는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비특혜원산지는 핵심 원료인 NiMoW-001 분말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화학물질의 혼합·건조 등을 수행한 한국 내 제조 공정이 실질적변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CBP는 해당 공정이 화학 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혼합 및 물리적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변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혼합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기존 물질과 구별되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지가 실질적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 각 성분이 본래의 화학적 특성을 유지한 채 혼합물 내에 잔존하는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형태·구조·물리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조현기 | 연구 2파트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공하은 | 연구 2파트 | 연구원

E-mail: ghe@kctdi.or.kr, Tel: 02-3416-516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